국회에서 의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인

2024년 2월 6일

국 무 총 리 한 덕 수 국 무 위 원 보건복지부 조 규 홍 장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이 상 민장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202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1. 마약류 사용 여부 감정을 위한 소변, 모발 등 생체시료를 분석할 수 있는 기기 및 장비
- 2.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 등에 필요한 보조적 검 사장비
-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 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치료보호 실적 등을 3년마다 평가하여 치료보호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하거나 재지정한 치료보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위한 전문교육을 개발·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두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를 둔다.
- ⑩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 및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나. 판별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라.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마.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2.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치료보호기관에서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한 사항
 - 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다.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판별검사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다.
- ①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재지정,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카.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④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야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4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① 수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자(실질적 운영자를 포함한다)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제3조제11호를 위반(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을 제51조의8로 하고, 제5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7호 중 "취급한 자"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로 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1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제2항"으로 한다.

제63조제1항제13호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항제6호의2 중 "제30조제2항"을 "제30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0조제2항부터 제12항까지, 법률 제1964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1조의7·제51조의8, 제60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7호,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1조제1항제1호, 제63조제1항제13호 및 법률 제19450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제1

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등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업무정지기 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하여 해당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치료보호기관의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숙박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을 운영하는 자가 그 영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에 수사기관의 장이 해당 영업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사용 행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법제처 제공>